

1. 신청 대상 보육 시설 등

센다이시내의 보육 이용 대상 시설은 보육소 및 인정 어린이원(보육소 부분),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 마마),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지역 범위)입니다. 시설마다의 특징과 입학 가능 연령 등은 각 시설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보육 이용 대상 시설 등 일람”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신청하기 전에 희망 시설을 견학하고, 통원 가능 여부 및 시설 등에서의 생활과 보육 방침, 그리고 급식의 알레르기 대응에 대해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세 이상의 유아가 인정 어린이원의 유치원 부분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접 각 시설에 신청하십시오.

※ 친정 출산 등으로 타 시정촌(市町村)에서 보육 시설 등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광역 입소 대상이 될 경우가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구청 가정 건강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소, 인정 어린이원(보육소 부분)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가정적 보육 사업(보육 마마),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지역 범위)은 3 세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연도 말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시설 등에 따라 위의 이용 가능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보육 이용 대상 시설 등 일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육 필요성의 인정

대상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이 필요하다는 인정(이하 「보육인정」이라고 함)을 받아야 됩니다. 센다이시내에 거주하고, 학부모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여 보육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육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을 받은 자에게는 센다이시가 「지급 인정증」을 교부합니다.

(1) 보육 인정의 사유

1. 1 개월에 64 시간 이상 취로하는 경우. (자영업, 야간근무, 내직 등을 포함함)
※ 육아휴업 중의 경우, 보육시설 등 이용개시 후 2 개월 이내에 복직하는 자가 대상.
※ 무보수 일은 취로가 아닙니다. (예; 자원봉사, 자가 소비용 농업, 반사회 임원 등)
2.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얼마되지 않아서 형제의 보육이 어려운 경우.
※ 보육 인정 기간은 산전과 산후, 각 8 주일 이내의 필요한 기간만.
3. 질병, 부상, 또는 정신 혹은 신체에 장애를 입는 경우.
4. 가정 내의 친족을 항상 개호하고 있는 경우.
5. 화재, 풍수해, 지진 등의 피해를 입어서 복구에 임하고 있는 경우.
6. 구직 활동 중인 경우. (보육시설 등의 이용개시 후에 구직 활동을 시작하는 경우를 포함함)
※ 보육 인정 기간은 3 개월까지입니다. 취로를 개시하면, 인정 기간이 연장됩니다.
7. 1 개월에 64 시간 이상 취학하는 경우. (학생, 직업 훈련 등)
8. 그 외, 상기 사항에 유사한 이유로 자녀를 보육하지 못하는 경우.

【주의】

• 보육 인정을 받은 후, 또는 보육 시설 등을 이용하기 시작한 후에도,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이 못하게 됩니다.

(2) 보육의 필요량(필요한 보육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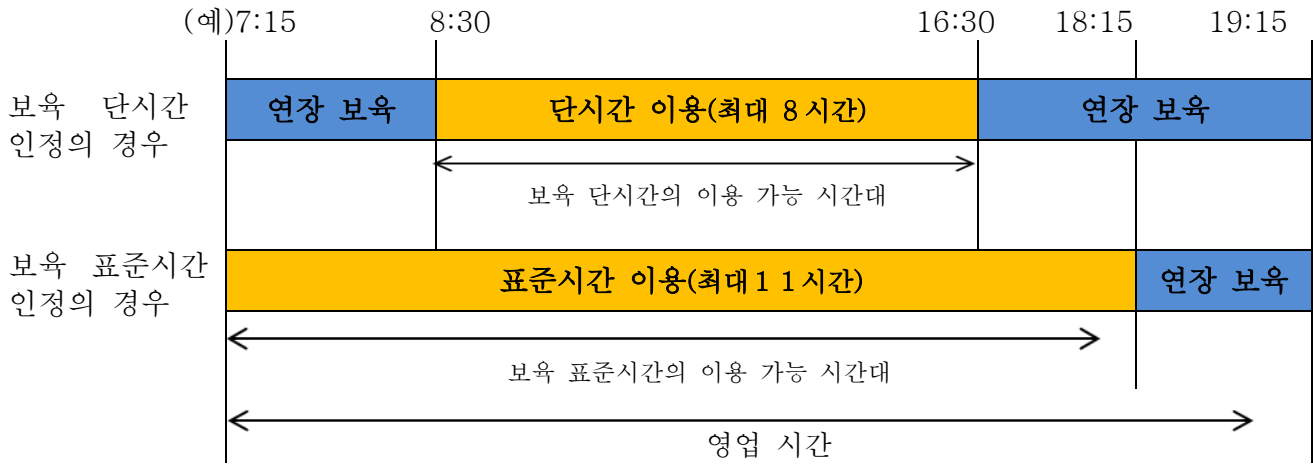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취로 시간과 통근 시간 등에 따른 보육의 필요량(필요한 보육시간)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보육의 필요량 인정에는 「보육 표준시간 인정」과 「보육 단시간 인정」의 2 종류가 있습니다. 각 가정의 필요한 보육시간을 고려해, 센다이시가 어느 인정인지를 결정합니다.

각 시설 등에서 ‘보육 표준시간의 시간대(최대 11 시간)’와 ‘보육 단시간의 시간대(최대 8 시간)’가 설정돼 있으므로, 이 시간대 내에서 취로 상황 등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각 시간대를 넘어 이용하는 경우는 연장 보육이 되어, 연장 보육료를 별도 내야 합니다.

각 보육 시설 등의 보육 이용 가능 시간대는 보육 시설 등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보육 이용 대상 시설 등 일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시간 해설】 **※기재 시간은 공립 보육소의 경우입니다. 설정 시간은 각시설마다 다릅니다.**



- ※ 각 시설 등에서 설정된 시간대 내에서 취로 상황 등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 하루에 8시간 또는 11시간 추가 요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 ※ 각 시간대를 넘어 이용하는 경우는 연장 보육이 되어, 연장 보육 요금을 내야 합니다.

3. 이용자 부담액(보육료)

(1)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결정 방법

보육료는 별지의 이용자 부담액표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입소 아동의 부모 및 동거의 조부모 등 (가계의 주재자인 경우에 한정됨)의 시정촌(市町村)민세액의 합계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보육료를 결정의 근거가 되는 시정촌민세액은 배당 공제·주택 차입금등 특별 세액공제·기부금 세액공제·외국 세액 공제·배당할액 공제·주식등 양도소득할액 공제등의 적용을 받기 전의 금액입니다.

※2016년 4-8월분의 보육료는 2015년도의 시정촌(市町村)민세로, 2016년 9월-2017년 3월분의 보육료는 2016년도의 시정촌민세로 결정됩니다.

※세의 미신고나 필요 서류의 미제출 등에 의해 시정촌(市町村)민세 과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육료는 최고 계층의 금액이 됩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실업했을 경우(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세법상의 편친 공제를 받지 않는 미혼의 편친세대인 경우, 그 외 특별한 이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육료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이용자 부담액(보육료)의 납부 방법

【보육소】

매월의 보육료는 계좌이체로 납부합니다. 보육료 납부기한(계좌 이체일)은 매월 말일(토일축일인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입니다.

【인정 어린이원·가정적 보육 사업(보육 마마)·사업소내 보육 사업(지역 범위)】

보육료는 각 시설 등에 직접 지불합니다.

※시설 등에 따라서는 보육료 외에 비용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시설 등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료는, 보육사 등의 인건비, 급식비, 시설 관리비 등에 충당됩니다. 이 비용을 유지하기 위해 서도 보육료는 반드시 기한 내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월급·예저금·부동산 등의 재산을 조사해, 압류 등 처분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4. 신청부터 이용까지의 절차

(1) 신청 장소와 접수 기간

제 1 희망의 보육 시설 등이 소재하는 구의 구청 가정 건강과에서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 아오바구청 관내의 보육 시설 등은 미야기 종합 출장소 보건복지과에서도 접수하고 있습니다만, 심사 등은 아오바구청 가정 건강과에서 합니다.

※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준비 못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희망 시설 등의 추가 및 변경은 마감일까지 연락해 주십시오.

【2016년 4월 1일자 입소의 신청 기간】

2016년 4월 1일자 입소의 일제 신청에 있어서의 접수 기간은 **2015년 11월 9일(월)부터 2015년 12월 9일(수)**까지입니다. 신청을 잊지 않도록 주의를 바랍니다.

【연도 도중의 이용 신청 마감일】

연도 도중부터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 마감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1일자 이용 개시의 경우(4월 1일을 제외함)・・・전월 5일까지
- 매월 16일자 이용 개시의 경우・・・・・・・・・・・・전월 20일까지

※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전 영업일이 신청 마감일입니다.

(2) 신청 방법

「지금 인정 신청서 겸 보육 시설 등 이용 신청서」에 기입한 후,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십시오. 또한, 신청서 제출 시에 보육 인정 및 이용 시설 등의 조정에 참고하기 위해 가정 상황 등을 청취하므로, 반드시 보호자가 본인이 창구에 오시기 바랍니다.

(3) 신청시 필수 서류(신청서의 첨부 서류)

신청에는 보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와 가정 상황 및 자녀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과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정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8 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주의】

- 보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부모 각각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동거 친족의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보육 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65세 미만의 동거 조부모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희망 보육 시설 등의 이용 조정에서 우선도가 낮아집니다.
- 주민표상에서 세대 분리를 하고 있어도, 동일 가옥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동거로 간주합니다.
- 보육 시설 등의 이용 개시 이후에도 보육이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근무 증명서의 내용을 근무처에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미리 양해 바랍니다.
- 단신부임 등으로 부와 모가 별거하고 있어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부모 각각에 대해 필요합니다. 또, 보육료도 부모의 시정촌(市町村)민세 과세액의 합계로 산정됩니다.

5. 신청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청서나 첨부 서류의 내용(주소, 취로 상황, 가정 상황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신청한 구청 가정 건강과까지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새로 직장이 결정한 경우나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 증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용 조정 후, 신청 내용과 실제의 가정 상황이나 보육이 필요한 상황 등에 변화가 있다면, 내정을 취소할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용 희망 시설 등을 철회하거나 변경하거나 하는 경우도 반드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 시설 등의 이용 개시 이후도 주소, 취로 상황, 가정 상황 등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는 즉시 가정 상황 등 변경계와 필요 서류를 보육 시설 등에 제출해 주십시오.

6. 이용의 우선 기준

각 보육 시설 등에서 이용 가능 인원수를 넘는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육의 필요성이 높은 자부터 우선적으로 이용을 결정합니다. 이용 우선도는 아래 기준에 근거하고, 보육의 필요성과 가정 상황을 수치화해서 결정합니다.

(1)보육 이용의 우선 순위에 관한 기준 지수

부모의 보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그 빈도나 시간 등에 따라 지수화한 것입니다.
기준 지수는 학부모 각각에 대해 10 점을 상한으로 계산합니다.

보 호 자 의 상 황				기준 지수	
피 고 용 자 ※1 월당 64 시간 이상 취로하는 것이 요건	주 5 일 이 상 취 로 (불규칙 근무는 1 월당 20 일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7 시간 이상	10	
			6 시간 이상	9	
			5 시간 이상	8	
			4 시간 이상	7	
			4 시간 미만	6	
	주 4 일 취 로 (불규칙 근무는 1 월당 16 일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7 시간 이상	8	
			6 시간 이상	7	
			5 시간 이상	6	
			4 시간 이상	5	
	주 3 일 이 하 취 로 (불규칙 근무는 1 월당 15 일 이하)	1 일당 취로시간	7 시간 이상	6	
6 시간 이상			5		
취로시간이 1 월당 64 시간 이상이지만, 1 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4	
자 영 업 ※1 월당 64 시간 이상 취로하는 것이 요건	사 업 주	1 일당 취로시간	7 시간 이상	9	
			6 시간 이상	8	
			5 시간 이상	7	
			4 시간 이상	6	
			4 시간 미만	5	
			7 시간 이상	7	
	주 4 일 취 로 (불규칙 근무는 1 월당 16 일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6 시간 이상	6	
			5 시간 이상	5	
			7 시간 이상	5	
	주 3 일 이 하 취 로 (불규칙 근무는 1 월당 15 일 이하)	1 일당 취로시간	7 시간 이상	5	
			취로시간이 1 월당 64 시간 이상이지만, 1 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전 종 자 (주 1)	주 5 일 이 상 취 로 (불규칙 근무는 1 월당 20 일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7 시간 이상	8
				6 시간 이상	7
				5 시간 이상	6
4 시간 이상				5	
주 4 일 취 로 (불규칙 근무는 1 월당 16 일 이상)		1 일당 취로시간	7 시간 이상	6	
	6 시간 이상		5		
취로시간이 1 월당 64 시간 이상이지만, 취로 일수 또는 1 일당 취로 시간이 상기 이하				4	
가 점 (주 2)	상시 위험물(대형기계·극약·화기·칼날 등)을 취급하는 등, 취로 형태상, 취로 시간 중에 보육할 수 없는 경우			2	
	사업소와 주택이 같은 부지내 혹은 인접지에 없는 경우 (외근 포함)			1	
내 직 (평균 월급이 5 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자영업 전종자의 항목을 적용함) ※1 월당 64 시간 이상 종사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4	
출 산(출산 예정일의 전후 각 8 주일 이내)				8	

보호자의 상황				기준 지수
질병 등	입원	1개월 이상		10
		2주일을 넘어 1개월 미만		8
	통원	주 4일 이상		6
	자택요양	상시 누워 있는 상태, 감염증 등		10
		상기 이외로 일상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어서 시중이 필요함		8
		일반 요양(운동, 외출 등이 제한돼 있지만, 신변 정리는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		6
	장애	개호 필요함(대체로 1, 2급 또는 A 판정 정도)		10
		보육에 지장이 있다(대체로 3급 또는 B 판정 정도)		7
		상기 이외로 필요하다고 생각됨(4급 이하)		4
자택 간호·개호, 통원, 시설통소, 입원환자 시중 듣기 ※월 64시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것이 요건.	주 5일 이상	1일당 소요시간이 7시간이상		10
		1일당 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7
	주 4일 이하	1일당 소요시간이 7시간이상		8
		1일당 소요시간이 4시간이상		5
1월당 64시간 이상 간호 혹은 개호하고 있지만, 1일당 종사시간이 상기 이하				4
재해 등 (화재 등으로 인한 가옥의 손상 등, 재해 복구하기 위해 보육할 수 없는 경우)				10
구직 중				3
학교, 직업 훈련 학교 등에의 통학 ※1월당 64시간이상 취학하는 것이 요건	주 5일 이상 취학 (불규칙 취학은 1월당 20일 이상)	1일당 취학시간	7시간 이상	9
			6시간 이상	8
			5시간 이상	7
			4시간 이상	6
	주 4일 취학 (불규칙 취학은 1월당 16일 이상)	1일당 취학시간	4시간미만	5
			7시간이상	7
			6시간이상	6
	주 3일 이하 취학 (불규칙 취학은 1월당 15일 이하)	1일당 취학시간	5시간이상	5
7시간이상			5	
취학시간이 1월당 64시간 이상이지만, 1일당 시간이 상기 이하				4
부모 부재(사망, 이혼, 단신부임, 행방불명, 구금 등)				10
그 외(상기 각 항목에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 10

주1 : 부모가 같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1명을 전종자로 간주합니다.

주2 : 자영업자의 취로 형태 등에 따라 점수를 추가합니다. 다만, 추가한 점수는 피고용자의 취로 날짜 및 취로 시간에 대한 기준 지수를 한도로 합니다.

※ 취로 시간 등이 불규칙한 경우는 그 평균을 기본으로 합니다.

(2) 아동의 가정 상황 등에 관한 조정 지수

가정의 경제 상황이나 보육 지원 상황 등에 따라 기준 지수에 가산·감산하기 위한 지수입니다.

아동의 가정 상황 등		조정지수
저소득 세대	생활보호 수급 세대, 시정촌(市町村)세 비과세 세대	2
	경제적으로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세대	4
보육이 필요한 아동과 동거하는 65세 미만의 조부모가 보육에 협력할 수 있는 경우		- 1
편친 가정 (모자 가정, 부자 가정, 또는 그와 비슷한 경우)		3
형제 자매의 입소 (이용 희망일 시점에 형제 자매가 보육소·인정 어린이원(탁아소 부분)·가정적 보육 사업(보육 마마), 소규모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지역 범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또는 동시에 이용 신청하는 경우)		3

아동의 가정 상황 등	조정 지수
육아휴업 취득을 위해 퇴소한 아동의 재신청	4
주된 생계 유지자인 보호자(주 3)가 도산, 정리해고 등의 사유로 날마다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2
3세 미만아 전용 보육소 또는 제휴 시설이 없는(제휴 시설 이용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 가정적 보육사업(보육마마), 소규모 보육사업, 사업소 내 보육사업(지역 범위) 졸업생 아동이 3세에 도달한 연도의 4월 1일부터 계속 보육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10
학대 우려 등, 특별한 사정으로 가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10

주 3 : 편친세대의 보호자 또는 한쪽 보호자가 피부양자(공제 대상 배우자 등)인 세대의 다른 한쪽의 보호자.
 ※ ‘저소득 세대’의 2 항목의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 ‘형제 자매의 입소’와 ‘육아휴업 취득하기 위한 퇴소 아동의 재신청’은 중복 신청 불가능함.
 ※시정촌(市町村)민세 과세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저소득 세대의 적용을 할 수 없습니다.

(3) 지수 동점의 경우, 이용 조정 순위

기준 지수와 조정 지수의 합계가 동점이 되었을 경우에 우선 순위를 판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1	기준 지수의 합계가 높은 경우
2	조정 지수에 있어서의 「저소득 세대」에의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가산이 4 점의 세대는 한층 더 우선)
3	부모 또는 그 한쪽이 단신부임 등으로 부재의 세대(조정 지수에 있어서 「편친 가정」의 가산이 적용되는 세대를 제외함)
4	취로 등으로 인가와 보육 시설, 임시 보육 등을 벌써 이용하고 있는 경우
5	동일 연도 내의 이용 조정에 있어서, 이용 소개를 받은 희망 시설 등의 이용을 사퇴했던 적이 없는 경우(가정 상황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함)
6	세대의 합계 소득 금액이 낮은 경우

※세대의 합계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조정 순위는 하위가 됩니다.

또, 아래 항목 해당자는 다른 아동들과 구분해 이용 조정을 합니다.

- 장애아동 보육 대상
- 새롭게 신제도 보육이용 대상이 된 시설 등의 재원아가 계속해 동일 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 인정 어린이원에 있어서 1호부터 2호로의 변경

7. 보육 시설 등에서의 생활

◎보육 시설 등의 이용 시간에 대해

- 보육 시설 등의 이용은 보호자의 취로(통근과 잔업의 시간을 포함함)나 질병 등의 실태를 근거로 보육이 필요한 시간대에 자녀를 맡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각 가정의 송영 시간은 보육 시설 등의 이용 개시에 앞서, 근무 시간이나 통근 시간 등에 따라, 이용 시설 등에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보육에 익숙해질 때까지

보육소 등의 시설은 집단 생활의 장소입니다. 집단 생활에 들어가는 아이들에게는 생활 환경의 변화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소 첫날부터 종일 보육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조금씩 보육 시간을 연장해, 그 후에 종일 보육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동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종일 보육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은 아동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보육 시설 등을 쉴 때

개인적인 이유로 장기 결석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의 보육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또, 보육 시설 등을 이용 중에 2개월을 넘어 장기 결석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퇴소해야 합니다.

◎클래스 편성

클래스 편성은 각 시설 등에서 결정합니다. 반드시 연령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 클래스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 ※형제 동시의 신청인 경우, 1 과 3 의 첨부 서류는 1 세트씩 제출하면 됩니다.
- ※가정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구청에서 미리 제출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 ※동거 조부모 등에 대해서는 주민 표상 세대 분리를 하고도 동일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 동거라고 간주합니다.
- ※필요서류 중 (*)는 지정 양식입니다. 구청 창구 또는 센다이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십시오.
http://www.city.sendai.jp/fukushi/kosodate/hoikusho/1215094_1663.html

(1)보육이 필요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65 세 미만의 조부모가 동거하는 경우에는 부모 증명서 외에 조부모도 보육이 필요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하십시오.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지만 희망 보육 시설 이용 조정에서 우선 순위가 저하함)

- (1) 직장인(이용 희망일까지의 취직 내정자를 포함) 근무증명서(부/모/조부/조모)
- (2) 자영업(상업, 농업 등) 사업상황신고(증명)서(부/모/조부/조모)
- (3) 임신중 또는 출산 직후 모자건강수첩 사본(모의 성명과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것) (모)
- (4) 질병, 부상, 정신 또는 신체에 장애를 입은 자
 진단서 또는 장애인수첩 등의 사본 (부/모/조부/조모)
- (5) 가정내에서 친족을 항상 간호하고 있는 자
 진단서 또는 간호 보험증 등의 사본 및 간호·간호 상황 신고서(*) (부/모/조부/조모)
- (6) 구직 활동 중의 자 구직 활동 상황 신고서(※)(부/모/조부/조모)
- (7) 취학 중인 자 재학증명서 등 및 취학상황 신고서(※)(부/모/조부/조모)
- (8) 기타 자녀를 보육하지 못하는 자 () (부/모/조부/조모)

(2) 가정 및 신청 아동의 상황 확인을 위한 서류

- 가정 상황 등 신고서(*)
- 건강 보험증 등 아동의 생년월일을 확인하는 서류(신청 시 센다이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자만)
- 아동 부양 수당 증서 또는 호적의 전부 사항 증명서 등 (편친세대만)

(3) 이용 조정 및 이용자 부담액(보육료) 결정을 위한 서류

아동의 부모 및 동거의 조부모 등의 것을 제출해 주세요. (과세 증명서 등은 65 세 이상의 조부모 등의 분도 필요합니다.)

- (1) 생활 보호 수급 중인 자 생활 보호비 지급표 사본 등
 - (2) 센다이시에서 시민세의 결정을 받는 자 불필요
 - (3) 센다이시에서 시민세의 결정을 받지 않은 분 (시외에서의 전입, 단신 부임 등)
 - ①2016 년 4-8 월분 보육료 결정에 필요한 서류(a-c 중 하나만 제출하십시오)
 - a 2015 년도 (2014 년분) 시 현민세 (비) 과세 증명서(※) (부/모/조부/조모)
 - b 2015 년도 시민세, 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통지서 【직장인 등】 (부/모/조부/조모)
 - c 2015 년도 시민세, 현민세 과세 명세서 【자영업 등】 (부/모/조부/조모)
 - ②2016 년 9 월부터 2017 년 3 월분 보육료 결정에 필요한 서류(a-c 중 하나만 제출하십시오)
- ※제출은 6 월 이후
- a 2016 년도 (2015 년분)시 현민세 (비) 과세 증명서(※) (부/모/조부/조모)
 - b 2016 년도 시민세, 현민세 특별 징수 세액의 통지서 【직장인 등】 (부/모/조부/조모)
 - c 2016 년도 시민세, 현민세 과세 명세서 【자영업 등】 (부/모/조부/조모)
- ※(비) 과세 증명서는 각년 1 월 1 일에 주민등록하던 시정촌에서 발행됩니다.
 ※ 어느 증명서도 소득액, 공제액, 과세액이 기재된 것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2016 년 9 월 1 일 이후에 입소를 희망하는 자, 이용 대기가 되어 9 월 1 일 이후도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상기 ②의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편친 세대, 장애인 수첩 등 소지자, 특별 아동 부양 수당 지급 대상 아동 및 장애 기초 연금등의 수급자가 있는 세대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면 보육료가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거주 지역의 구청 가정 건강과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